

의안번호	2209595
의 퇴 인	민형배의원
회 답 일	2025.5.7.
추계번호	25D2287

12.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제정안에 따라 반헌법·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고 30명의 채용인력 및 50명의 파견인력 등 80명 규모의 사무처를 운영할 경우 인건비, 기본경비, 회의참석수당을 포함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단년도에 47억 8,6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합계	연평균
인건비 등	4,786	4,786	4,786
회의참석수당	115	115	115
합계	4,901	4,901	4,90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 (반헌법·내란행위조사 특별위원회의 설치)	12.3 비상계엄의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의 책임을 규명하며 재발방지 및 헌정질서의 수호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장 직속으로 "반헌법·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"(이하 "위원회")를 둔(제1항)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간 활동하며, 필요 시 국회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음(제2항)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활동기간 종료 후 보고서나 백서의 작성 및 발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(제3항)	의무규정
2	안 제5조 (위원회의 구성)	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(제1항) 위원은 국회, 정당, 법조계, 학계,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임명함(제2항)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3	안 제10조 (사무처의 설치)	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(제1항) 조사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30명 이내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함(제6항)	의무규정
4	안 제11조 (공무원 등의 파견)	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"국가기관등"이라 한다)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(제1항) 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, 그 정원은 50명을 초과할 수 없음(제5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조 (반헌법·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의 설치)	○	—
2	안 제5조 (위원회의 구성)	○	—
3	안 제10조 (사무처의 설치)	○	—
4	안 제11조 (공무원 등의 파견)	○	—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에 따라 반헌법·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(이하 "위원회")와 사무처를 설치하여 반헌법행위의 진상규명, 반헌법행위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의 현황에 대한 조사 및 방지방안 모색, 반헌법행위 피해자의 진술 청취 및 보호 대책 마련, 법적 처벌 및 배상 방안에 관한 연구, 내란의 재발방지와 헌정수호를 위한 방안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,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됨
 - 제정안은 위원회를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추계에서는 10·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사례를 참조하여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, 상임위원 1인 등 3명을 상임으로 가정하고, 나머지 12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가정함
 - 제정안은 조사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30명 이내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추계에서는 직원을 30명으로 가정함
 - 제정안은 조사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정원이 50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추계에서는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을 50명으로 가정함
 - 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사무처 직원의 직급구성 및 인건비 단가는 「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」에 의한 10·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함
- 반헌법·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·운영, 사무처 설치에 따른 인력 증원 규모 등은 10·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례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¹⁾ 등을 적용하여 추계함
- 위원회 및 사무처 직원이 사용할 사무실 관련 비용은 국회의 유희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에서 제외함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5.4)

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소비자물가상승률(CPI, %)	2.0	2.0	2.0	2.0	2.0	2.0

- 제정안 부칙은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제정안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간 활동하며, 필요 시 국회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고, 보고서나 백서의 작성 및 발간 등을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3개월 이내에서 한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, 추계기간은 2026년 단년도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반헌법·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 및 사무처의 설치

- 제정안에 따라 위원회와 사무처를 설치·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, 기본경비 등을 추계
- 추계에서는 10·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사례를 참조하여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, 상임위원 1인 등 3명을 상임으로 가정하고, 위원장은 장관급, 부위원장 1인 및 상임위원은 차관급으로 가정
 - 사무처 직원의 정원은 30명으로 가정하며, 직급별 구성은 10·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비를 참조함

[표 2] 위원회 및 사무처 직원의 직급별 구성

(단위: 명)								
구 분	장관급	차관급	고위공무원	4급	5급	6급	7급	합계
인원	1	2	3	3	5	13	6	33

주: 10·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례를 참조함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인건비 단가는 2025년 10·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직급별 인건비 단가에 최근 3년간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.4%를 적용

[표 3] 인건비 단가: 2026년

(단위: 백만원)							
구 분	장관급	차관급	고위공무원	4급	5급	6급	7급
인건비 단가	170.8	162.8	145.5	108.8	86.9	63.7	50.7

주: 10·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례를 참조함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(인건비) 인건비는 인건비 단가에 직급별 인원명을 고려하여 산정하고, 기관부담금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기관부담 효율²⁾을 적용하여 산정함

[표 4]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합계
인건비	2,826	2,826
기관부담금	369	369
합계	3,195	3,19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(기본경비) 10·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인당 기본경비(2025년 예산 기준)³⁾에 파견인원 50명을 포함한 전체인원 83명의 기본경비를 산정하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본경비는 아래 표와 같음

[표 5] 기본경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합계
기본경비	1,178	1,17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(자산취득비) 자산취득비는 위원회 및 사무처 직원 및 파견인원을 포함한 83명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(2025.4월)한 1인당 자산취득비⁴⁾를 적용하여 산정함

2)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공무원 신규채용 관련 기관부담 효율은 아래 표와 같음

	2026	2027	2028	2029
공무원 신규채용 관련 기관부담 효율(%)	13.066	13.130	13.194	13.286

3) 10·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8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, 2025년 기본경비는 48억 1,223만원 중 회의참석수당, 사무실 및 위원회청사 임차료, 자산취득비를 제외하며 12억 3,786만원으로, 1인당 기본경비는 약 1,391만원임

4)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정부기관 설립 시 1인당 자산취득비는 아래 표와 같음

(단위: 천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
정부기관 자산취득비	4,981	5,080	5,182	5,285	5,391

[표 6] 자산취득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합계
자산취득비	413	41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(인건비 등) 위원회의 상임위원 3명 및 사무처 직원 30명, 파견직원 50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, 기본경비 등에 소요되는 추가재정 소요는 아래 표와 같음

[표 7] 인건비 등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합계
인건비	2,826	2,826
기관부담금	369	369
기본경비	1,178	1,178
자산취득비	413	413
합계	4,786	4,78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위원회 회의운영

- 제정안에 따라 반헌법·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경우, 비상임위원 회의참석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
- 제정안에 따라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3명의 상임위원을 제외한 12명의 비상임위원에게는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함
 - 추계에서는 비상임위원을 12명으로 가정하며, 회의참석수당은 40만원(참석수당 20만원, 안건검토비 20만원), 회의는 월 2회(연 24회)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

[표 8] 반헌법·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 회의참석수당

	민간위원 (명)	연간 회의개회 건수(회)	수당 (천원)	연간 추가재정소요 (백만원)
위원회	12	24	400	11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추계결과

- 제정안에 따라 반헌법·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고 30명의 채용인력 및 50명의 파견인력 등 80명 규모의 사무처를 운영할 경우 인건비, 기본경비, 회의참석수당을 포함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단년도에 47억 8,6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9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

(단위: 백만원)		
구분	2026	합계
인건비 등	4,786	4,786
회의참석수당	115	115
합계	4,901	4,90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반헌법·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 및 사무처 규모를 제정안의 최대 정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, 직원의 직급별 구성 및 인건비 및 기본경비 내역은 10·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례를 참조하여 산정한 결과로, 실제 추가재정소요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